

의안번호	제 929 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21년 12월 15일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29
----------	-----

제안연월일 : 2021년 12월 15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반영, 인용 조문 및 기타 내용 정비 등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례회 집회일 등 시행령으로 정했던 정례회 운영을 지방의회의 조례 위임에 따른 내용 정비 (안 제8조제1항)
 -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해당 연도에 처음으로 구성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하는 규정 삭제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지방의회의 조례 위임에 따른 신설로 의사정족수 규정 준용 (안 제8조의2)
 -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으로 규정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원의 의안 발의 정족수를 지방의회의 조례 위임에 따른 신설 (안 제9조의2)
 - 조례 위임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1조제1항 (의안의 제출과 발의) 조문 이관 규정

- 교섭단체 구성 관련 조문 명확화 및 지원 근거 신설 (안 제28조)
 -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이동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의장에게 보고 및 교섭단체 필요한 경비 등 지원 근거 규정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자율화에 따른 내용 정비 (안 제35조)
 -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활동기간을 정하고,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 본회의 제출 규정 신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준용 규정 및 특별위원회 예외규정 신설 (안 제36조 및 안 제37조)
 - 상임위원회 임기 관련 준용 규정 및 특별위원회 관련 예외규정 신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기타 내용 정비 (안 제7조, 안 제10조, 안 제15조, 안 제17조, 안 제24조, 안 제25조, 안 제26조, 안 제39조, 안 제45조, 안 제49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해당없음
- 관련부서 협의 : 해당없음
- 비용추계 : 해당없음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개회하고 회의일수는”을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연도에는 본회”를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회”로,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를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후단을 삭제한다.

제8조의2 및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임시회의 소집) 의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나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의2(의안의 제출과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 교육감, 위원회,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10조 단서 중 “부의장”을 “충청북도의회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사고가 있”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로, “제70조”를 “제82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사고가 있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의장”을 각각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본회의”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의장”을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하되, 의장이”를 “하되,”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본회의”를 “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허가”를 “이를 허가”로 한다.

제26조 중 “법 제79조제1항”을 “법 제91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교섭단체의 구성)”을 “(교섭단체의 구성 및 지원)”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이 제1항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중 “특별히”를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4조제2항을 준용하고, 제35조제2항, 제3항, 제4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4조제2항을 준용하고, 제35조제2항, 제3항, 제4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제5항 본문 중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를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로 한다.

제4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제49조 중 “법 제40조”를 “법 제4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회기)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u>개회하고 회의일수는 60일 이내로 하며,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u></p>	<p>제7조(회기) ----- -- <u>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u> -----.</p>
<p>제8조(정례회의 집회일) ① 의회의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u>연도에는 본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해당연도에 처음 구성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u></p> <p>1.·2. (생략)</p> <p>②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8조(정례회의 집회일) ① ----- ----- -----. ---- <u>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회-----</u> - <u>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후단 삭제></u></p> <p>1.·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8조의2(임시회의 소집) 의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나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u></p> <p><u>제9조의2(의안의 제출과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 교육감, 위원회,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u></p>

제10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 개회식을 행한다.

제15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③ (생략)

제17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결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③ (생략)

제24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정부에서 통지

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10조(개회식) -----

충청북도의회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

제15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제82조-----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청가 및 결석) ① -----

-----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
-----.

된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③ (생략)

④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5조(사직) ① 의회는 본회의의 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26조(자격심사) 의원은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 ②

-----.

② -----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의장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

-----.

⑤ ----- 본회의
또는 위원회-----
----- 의장 또는 위원장-----

-----.

⑥ ----- 하
되, -----

제25조(사직) ① ----- 그 -----

----- 이
를 허가-----.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자격심사) ----- 법 제91조제 1항-----

-----.

제28조(교섭단체의 구성 및 지원)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제35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별히 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이 제1항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특별위원회) ① -----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히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②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 ③ (생략)

<신 설>

제37조(윤리특별위원회) ① ~ ③ (생략)

<신 설>

제39조(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

----- . <단서 삭제>

제36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4조제2항을 준용하고, 제35조제2항, 제3항, 제4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윤리특별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4조제2항을 준용하고, 제35조제2항, 제3항, 제4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선임 등) ① ~ ④ (생략)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5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2. (생략)
-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 4. ~ 6. (생략)

제49조(서류제출요구) 의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선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본회의에 서 동의를 얻어 -----
-----.
-----.

제45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범위) -----

-----.

- 1. 2. (현행과 같음)
-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 4. ~ 6. (현행과 같음)

제49조(서류제출요구) ----- 법 제48조-----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임사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사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사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사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0조(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72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 참석 인원이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82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를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9조(의원의 사직)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지방의회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 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